

서울특별시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안)

| | |
|----------|------|
| 의안 번호 | 1492 |
|----------|------|

제안년월일 : 2023년 12월 20일
제안자 : 교통위원장

1. 대안의 제안경위

- 이새날 의원 외 49명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1012호), 김동욱 의원 외 28명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1286호), 최기찬 의원 외 14명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1401호)을 서울시의회 제321회 정례회 교통위원회 제5차 회의(2023.12.20.)에서 일괄 심사한 결과,

3건의 개정조례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3건의 개정조례안의 내용을 통합·보완하여 「서울특별시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대안)」을 위원회 대안으로 제출하기로 함

2. 대안의 제안사유

- 이새날 의원 외 49명, 김동욱 의원 외 28명, 최기찬 의원 외 14명이 각각 발의한 「서울특별시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 법령과 중복사항을 삭제하고 기본 및 시행 계획을 소관 상임위에 보고토록 하는 한편 실태조사 시에 그 시설의 어린이 보호자의 의견을 수렴한 학교장 의견을 포함토록 하고, ‘보행 신호 음성안내 보조장치’ 설치장소에 “법 제68조에 따른 도로에서의 금지행위에 관한 주의가 필요한 곳”을 추가하고 교통안전교육 시에 동 내용을 교육토록 하는 한편, “인공지능 등의 기술을 활용한 스마트 보행안전시설” 설치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을 신설하는 것인 바, 3건의 일부개정조례안을 통합·보완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제출함

3. 대안의 주요골자

- 가. 상위 법령과 중복되고 조례에서 사용되지 않는 정의 규정을 삭제함 (안 제2조)
- 나. 교통안전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과 그 개선 결과를 서울특별시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규정함(안 제4조제4항 신설)
- 다.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 실태조사에 해당 교통시설에서 교육을 받는 어린이의 보호자 의견을 수렴한 교육시설의 장 의견을 포함하도록 규정함(안 제5조제2항 신설)
- 라. 보행신호 음성안내 보조장치 설치 장소에 통학로에서 도로교통법 제68조에 따른 도로에서의 금지행위에 관한 주의가 필요한 곳을 추가로 규정함(안 제7조의3)
- 마. 시장이 어린이 보호구역 및 어린이통학로, 교육시설 등의 장소에 설치할 수 있는 안전시설 및 재정지원 사항에 인공지능 등의 기술

을 활용한 스마트 보행안전시설을 설치 근거를 규정함.(안 제7조의5제1항제7호 신설)

바. 어린이 안전교육에서 도로교통법 제68조에 따른 도로에서의 금지행위와 통학로에서 보행자 통행 및 보호를 위한 교통안전 수칙에 관하여 지도할 수 있도록 규정을 마련함(안 제8조)

사. 그 밖에 부정확하고 부자연스러운 표현을 수정함

서울특별시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13세미만”을 “13세 미만”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부터 제4호까지를 각각 삭제하며, 같은 조 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6호 중 “「도로교통법」 제12조”를 “「도로교통법」 제12조에 따른”으로 한다.

5. “교육시설”이란 법 제12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시설을 말한다.

제4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시장은 수립한 기본계획 또는 연도별 시행계획과 연도별 시행계획에 따른 개선 결과를 서울특별시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5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에는 해당 교육시설에서 교육을 받는 어린이의 보호자 의견을 수렴한 교육시설의 장 의견을 포함하여야 한다.

제7조의2제2항 중 “어린이보호구역”을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한다.

제7조의3제1항 중 “예상되는”을 “예상되거나 통학로에서 법 제68조에 따른 도로에서의 금지행위에 관한 주의가 필요한”으로 한다.

제7조의4제1항 중 “어린이 보호구역 내 공사현장에 대하여 필요 시”를 “필요한 경우 어린이 보호구역 내의 공사현장에 대하여”로, “시행주체”를 “공사시행주체”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대하여 공사 시행을 어린이 통학시간 외에”를 “대하여 어린이 통학시간이 아닌 시간에 공사를”로 한다.

제7조의5제1항제2호 중 “도로교통법 제3조”를 “법 제4조”로, “도로교통법 시행”을 “같은 법 시행”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 제5호 중 “LED”를 “발광다이오드(LED)”로 하고, 같은 항 제7호를 제8호로 하며, 같은 항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사람중심도로 설계지침」 제2조제13호에 따른 어린이 횡단보도 대기소 (옐로카펫, yellow carpet)
7. 인공지능 등의 기술을 활용한 스마트 보행안전시설

제8조제1항제2호 및 제3호를 각각 제4호 및 제5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2호 및 제3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방법에 의한다”를 “방법으로 한다”로 한다.

2. 법 제68조에 따른 도로에서의 금지행위 등에 관한 지도
3. 통학로에서 보행자 통행 및 보호를 위한 교통안전 수칙에 관한 지도

제9조제2항 중 “등에 의한”을 “등으로 하여금”으로 한다.

제11조 중 “조례의 규정에 의한”을 “조례에 따른”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 현 행 | 개 정 안 |
|--|--|
| <p>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p> <p>1. “어린이 보호구역“이란 「도로교통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에 따라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u>13세 미만의</u>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보호하기 위하여 지정된 구역을 말한다.</p> <p>2. “<u>초등학교 등</u>“이란 「<u>유아교육법</u>」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과 「<u>초·중등교육법</u>」 제38조와 제55조에 따른 <u>초등학교·특수학교</u>를 말한다.</p> <p>3. “<u>보육시설</u>“이란 「<u>영유아보육법</u>」 제10조에 따른 어린이집(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보육시설에 한정한다)을 말한다.</p> <p>4. “<u>학원</u>“이란 「<u>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u>」 제2조에 따른 학원(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학원에 한정한다)을 말한다.</p> | <p>제2조(정의) ----- -----.</p> <p>1. ----- ----- ----- -----<u>13세 미만</u>----- ----- -----.</p> <p style="text-align: center;"><u><삭 제></u></p> <p style="text-align: center;"><u><삭 제></u></p> <p style="text-align: center;"><u><삭 제></u></p> |

5. “교육시설”이란 제2호와 제3호, 제4호에서 규정한 초등학교 등과 보육시설, 학원을 말한다.

6. “통학로”란 교육시설에서 교육을 받는 어린이가 자택에서 교육시설까지 일상적으로 이동하는 주요한 통로 중 「도로교통법」 제12조 “어린이 보호구역”과 그 밖에 서울특별시장이 어린이 보행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통로를 말한다.

7.·8. (생략)

제4조(기본계획수립 등) ① ~ ③

(생략)

<신설>

제5조(실태조사) (생략)

<신설>

5. “교육시설”이란 법 제12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시설을 말한다.

6. -----

----- 「도로교통법」 제12조에 따른 -----

-----.

7.·8. (현행과 같음)

제4조(기본계획수립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시장은 수립한 기본계획 또는 연도별 시행계획과 연도별 시행계획에 따른 개선 결과를 서울특별시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5조(실태조사) ① (현행 제목 외의 부분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에는 해당 교육시설에서 교육을 받는 어린이의 보호자 의견을 수렴한 교육시설의 장 의견을 포함하여

제7조의2(어린이 보호구역에서의 정차 및 주차금지) ① (생략)

② 시장은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시설의 주(主) 출입문과 직접 연결되어 있는 도로에는 서울경찰청장과 협의하여 정차나 주차를 금지 시킬 수 있다.

③ (생략)

제7조의3(보행신호 음성안내 보조장치 설치 및 재정지원) ① 시장은 교통안전사고에 취약한 어린이 보호구역 및 교육시설이 있는 장소 또는 어린이 무단횡단이 예상되는 곳에 보행신호 음성안내 보조장치를 설치할 수 있다.

②·③ (생략)

제7조의4(어린이 보호구역 내 공사현장 관리) ① 시장은 어린이 보호구역 내 공사현장에 대하여 필요 시 어린이 교통안전을 위한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거나 시행주체에게 요구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어린이 보호구역 내

야 한다.

제7조의2(어린이 보호구역에서의 정차 및 주차금지) ① (현행과 같음)

② ----- 어린이 보호구역-----

-----.

③ (현행과 같음)

제7조의3(보행신호 음성안내 보조장치 설치 및 재정지원) ① ---

--- 예상되거나 통학로에서 법 제68조에 따른 도로에서의 금지행위에 관한 주의가 필요한 ---
-----.

②·③ (현행과 같음)

제7조의4(어린이 보호구역 내 공사현장 관리) ① ----- 필요한 경우 어린이 보호구역 내의 공사현장에 대하여 -----

공사 시행주체-----.

② -----

공사현장에 대하여 공사 시행을 어린이 통학시간 외에 실시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제7조의5(안전시설 설치 및 재정 지원) ① 시장은 어린이 보호구역 및 어린이통학로, 교육시설이 있는 장소 또는 어린이 무단횡단이 예상되는 곳 등에 안전한 통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시설을 설치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1. (생략)
 2. 도로교통법 제3조에 따른 교통안전시설 및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8조에 규정된 안전표지
 3. 옐로카펫
 4. (생략)
 5. 횡단보도 LED 안전표지판
 6. (생략)
- <신설>

----- 대하여 어린이 통학시간이 아닌 시간에 공사를 -----.

제7조의5(안전시설 설치 및 재정 지원) ① -----

-----.

1. (현행과 같음)
2. 법 제4조-----
----- 같은 법 시행-----

3. 「사람중심도로 설계지침」 제2조제13호에 따른 어린이 횡단보도 대기소(옐로카펫, yellow carpet)
4. (현행과 같음)
5. ----- 발광다이오드(LED)-----

6. (현행과 같음)
7. 인공지능 등의 기술을 활용한 스마트 보행안전시설

7. (생략)

② (생략)

제8조(어린이 안전교육) ① 시장은 교육시설의 어린이를 대상으로 필요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교통안전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1. (생략)

<신설>

<신설>

2.·3. (생략)

② 제1항에 따른 어린이 교통안전교육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의한다.

1.·2. (생략)

제9조(교통안전지도사 등) ① (생략)

② 시장은 어린이의 등·하교 교통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교육시설의 장에게 교사, 학부모 또는 교통봉사단체 등에 의한 등·하교길 교통지도반을 운영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8. (현행 제7호와 같음)

② (현행과 같음)

제8조(어린이 안전교육) ① -----

--.

1. (현행과 같음)

2. 법 제68조에 따른 도로에서
의 금지행위 등에 관한 지도

3. 통학로에서 보행자 통행 및
보호를 위한 교통안전 수칙에
관한 지도

4.·5. (현행 제2호 및 제3호와
같음)

② -----
----- 방법으
로 한다.

1.·2. (현행과 같음)

제9조(교통안전지도사 등) ① (현
행과 같음)

② -----

----- 등으
로 하여금 -----
-----.

제11조(권한의 위임) 시장은 이
조례의 규정에 의한 업무의 일
부를 구청장에게 위임하여 처리
할 수 있다.

제11조(권한의 위임) -----
조례에 따른 -----

-----.